

보수교육

[] 면제

[] 유예

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5일
신청자	성명		면허번호
	직종 [] 의사 [] 치과의사 [] 한의사 [] 조산사 [] 간호사		
신청사유	면제·유예 신청 대상 연도		
	구체적 면제사유(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6항) [] 1. 전공의 [] 2. 의과대학·치과대학·한외과대학·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[] 3.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[] 4.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		
	구체적 유예사유(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7항) [] 1.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[] 2.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		

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 (서명 또는 인)

중앙회장 귀하

첨부서류	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처리절차	
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사실 확인 등 → 기안 결재 →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: 각 중앙회의 보수교육 담당 부서	